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2011 년 5 월 31 일자
정관**

룩셈부르크 가변자본형 투자회사(SICAV)

R.C.S Luxembourg, section B numéro 6 317

제 1 조

인수인들과 주식 보유자들은 가변자본형 투자회사의 자격을 갖춘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로서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의 명칭을 갖는 회사("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 2 조

회사의 존속기간은 무한하다. 다만 회사는 본 정관의 변경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채택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제 3 조

회사의 유일한 목적은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주주들에게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따른 수익을 지급할 목적으로 (i) 종류를 불문한 양도성 증권 및 (ii) 간접투자기구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에 관한 2002 년 12 월 20 일자 법률 (개정, 대체되는 경우 그 개정, 대체 법률을 포함) (이하 "2002 년 법률")의 제 41(1)조에 규정된 모든 기타 허용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회사는 2002 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상기 목적을 달성, 추진하기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4 조

회사의 등록 사무소는 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 시에 두고 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결의로 룩셈부르크 내외에 자회사, 지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 시내에서 회사의 등록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회사의 등록사무소에서의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 또는 등록 사무소와 해외 지점 간의 연락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등록 사무소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해외로 임시 이전될 수 있다. 그와 같이 등록 사무소를 해외로 임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국적은 변동되지 않으며 회사는 계속 룩셈부르크 설립회사로 간주된다.

제 5 조

* 2007 년 5 월 18 일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상기 명칭을 정하고, 2008 년 6 월 30 일 전까지의 어떤 일자에 공증인에게 진술하여 동 명칭을 채택할 권한을 이사에게 부여하였다. 동 일자까지는 제 1 조는 아래와 같고 회사의 명칭도 아래와 같다.

인수인들과 주식 보유자들은 가변자본형 투자회사의 자격을 갖춘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로서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sk Global Funds)의 명칭을 갖는 회사("회사")의 주주가 된다."

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주식에 의하여 표창되며 본 정관 제 23 조에 정의되는 회사의 순자산의 합계 상당액으로 한다.

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250,000 유로에 상당하는 미달러금액으로 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제 23 조에 따라 결정되는 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제 24 조에 따라 완전 납입 주식을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기존 주주들은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우선인수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적법하게 승인된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또는 기타 적법하게 승인된 자에게 신주에 대한 인수 청약을 받고 신주를 전달하며 납입되는 신주인수대금을 받는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클래스의 주식 또는 하나의 주식 클래스내에서 여러 가지 하위 클래스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각 클래스의 주식의 발행 대금을 제 3 조에 따라 이사회가 각각의 펀드에 관하여 수시로 결정하는 지리적 지역, 산업부문, 통화지역 또는 구체적 주식이나 채무증권 유형에 대응하는 유가증권 또는 자산에 투자한다.

이사회는 각 주식클래스 내에 해당 클래스의 구체적 투자정책에 따라 공동으로 자산이 투자되는 2 이상의 하위클래스를 설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하위클래스는 판매 및 상환 수수료 체계, 헤지정책 또는 기타 특징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언제든지 특정 하위클래스를 폐쇄할 수 있고, 해당 하위클래스 주주들에게 30 일 전에 통지하여 해당 하위클래스를 동일한 또는 다른 펀드의 다른 하위클래스와 합병할 수 있다.

회사의 자본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 클래스에 귀속되는 순 자산이 미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미화로 전환하여야 하고 모든 클래스의 (미화표시) 순자산의 합계를 자본금으로 한다.

회사의 각 하위펀드의 주식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특정 클래스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각 하위펀드의 주식은 판촉되고 목표 투자자들의 범주에 도달하기 위하여 충분히 광범위한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제 6 조

회사는 기명식 주식만 발행하여야 한다. 기명 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발행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기명 주식의 주주는 주권 대신에 자신의 보유 주식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 기명주주는 자신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둘 이상의 주권을 발행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주권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다. 주권은 회사의 두 명의 이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주권에 대한 이사들의 서명은 자필 서명, 인쇄된 서명 또는 모사 서명일 수 있다. 이사들의 서명 중 하나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의한 서명일 수 있다. 단, 그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형식으로 임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이 접수되고 본 정관의 제 24 조에 정한 주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만 주식이 발행된다. 청약자는 지체없이 확정 주권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신청이 접수되고 양도성증권 및 회사의 투자정책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자산을 현물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주권이 발행될 수 있다.

청약자의 주금납입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단주는 의결권을 갖지 않지만 회사가 결정하는 경우 단주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이루어진다.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은 주주명부에 기록된다. 주주명부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1 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보관되며 주주명부에는 각 기명주식 보유자, 회사에 통지된 그의 거주지나 주소, 보유 주식의 수와 클래스 및 각 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이 기재된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a)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및 회사에게 만족스러운 기타 증서를 회사에 인도하면 회사가 해당 양도를 (주주명부에) 기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b)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 또는 그를 대리하여 행위할 적절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양도신고서를 주주명부에 기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각 기명주주는 회사가 통지나 연락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주소는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주주가 상기한 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경우 해당 주주가 다른 주소를 회사에 제공할 때까지 회사의 등록 사무소 또는 회사가 수시로 기재하는 기타 주소가 해당 주주의 주소로 간주된다. 주주는 회사의 등록 사무소 또는 회사가 수시로 정하는 기타 주소로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어떤 주주가 자신의 주권이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회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결정하는 조건과 보증(보험회사가 전달하는 보증금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운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 동 주권이 분실 또는 멸실된 최초 주권의 부분이라는 사실이 동 주권에 기재되며 최초 주권은 무효가 된다.

회사는 그러한 새로운 주권의 비용 및 그의 발행 및 등록 또는 최초 주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한 모든 합리적 비용을 해당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회는 어떤 자가 (a) 어느 국가 또는 정부당국의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도록 하지 않고 (b) 이사회의 의견으로서 회사가 원래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

는 조세책임 또는 기타 금전상의 불이익한 결과가 회사에 초래되도록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 또는 펀드가 자신을 위한 적절한 투자대상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등) 펀드 및/또는 펀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주식의 발행을 제한하기로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이러한 제한을 폐지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어떤 인, 회사 또는 법인 또는 (이하 정의되는) "미국인"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는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i) 주식의 발행을 거부하고 (ii) 주식의 등록 또는 양도로 인하여 회사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갖게 될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b)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 또는 주식의 양도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가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인하여 회사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거나 장래에 그런 결과가 될 것인지의 여부, 범위 및 사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정보(및 그를 입증하는 진술서)의 제공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 (c) 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기타인과 함께 회사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자가 회사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전부를 강제로 상환할 수 있다.
 - 1) 회사는 상환 대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주명부상 상환 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기한 바와 같이 상환되어야 하는 주식, 상환가격 및 상환가격 지급장소를 기재한 통지(이하 "상환통지"라 함)를 송부한다. 상환통지는 요금선납의 등기우편으로 회사가 알고 있는 해당 주주의 최종 주소 또는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최종 주소로 우편으로 송부한다. 해당 주주는 상환통지를 수령한 즉시 상환통지에 기재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회사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상환통지에 기재된 일자의 영업시간 종료 후 즉시 해당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그가 종전에 보유한 주식은 취소된다.
 - 2) 상환통지에 기재된 주식의 상환가격(본 정관에서 "상환가격"이라 함)은 해당 클래스의 회사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본 정관의 제23조에 따라 결정됨)에서 모든 상환에 대하여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고 해당 시점에서 유효한 회사의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환수수료 및/또는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3) 상환가격은 외화환전에 대하여 제한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미화로 해당 주식의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회사는 룩셈부르크 또는 기타 장소(상환통지에 기재됨)에 소재하는 은행에 상환가격을 예치하여야 하며, 상환통지에 기재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제출된 후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에게 상환가격이 지급된다. 상환가격이 예치된 후에는 해당 주식의 소유자

로 기재된 주주가 해당 주권을 유효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상기 은행으로부터 예치된 상환가격을 (이자 없이) 수령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도 상환통지에 기재된 주식에 대하여 추가적 권리 또는 회사나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

- 4) 어떤 자의 주식 소유권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상환통지 일자 현재 회사가 판단한 것과 다르게 주식이 소유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본 제8조에 의하여 회사에 부여되는 권한의 행사가 무효로 되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단, 회사는 그러한 권한을 신의성실로 행사하여야 한다.

- (d) 회사는 회사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자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사용되는 "미국인"이라는 용어는 (1)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 (2) 미국의 주 또는 속령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동업관계 또는 조합 (partnership) (관련 재무부 규정에 따라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동업관계 또는 조합은 제외), (3) 미국 또는 그의 주 또는 속령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법인, (4) 재단 또는 신탁 (미국내에서의 사업영위 또는 거래와 유효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 미국외에서의 이익이 미 연방 소득세 계산 목적상 총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재단은 제외), (5) 신탁 (미국내의 법원이 그 신탁의 관리에 대하여 주된 감독권을 가지며 하나 이상의 미국인이 그 신탁의 모든 실질적 결정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 경우에 국한) 또는 (6) 1996년 8월 20일 전에 미국인으로 취급받았고 동일자 현재 존속중인 신탁 가운데 규정에 따라 미국인으로 계속하여 취급받기로 선택한 신탁을 의미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상기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현재 유효한 회사의 사업설명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적법하게 소집된 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 전체를 대표한다.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들의 보유 주식이 속하는 주식 클래스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행위를 명령하고 수행하며 인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10 조

정기주주총회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회사의 등록 사무소 또는 소집통지에 기재된 룩셈부르크 내의 기타 장소에서 매년 2 월 20 일 오전 11 시에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개최된다. 그러한 소집일자가 룩셈부르크에서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정기 주주총회는 그 다음 룩셈부르크 은행영업일에 개최된다.

기타 주주총회는 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된 장소 및 시간에 개최된다.

하나의 펀드,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 또는 다수의 펀드,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의 주식의 주주들의 임시총회는 해당 펀드(들), 클래스(들) 또는 하위클래스(들)에 관한 사항 및/또는 그

러한 주주들의 권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제 11 조

회사의 주주총회 및 통지기간은 본 정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족수와 통지기간에 따라야 한다.

1 주는 주식의 클래스 또는 클래스 내 주당 순자산가치에 관계없이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본 정관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주주는 서면으로 또는 여하한 기타 의사소통 수단으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위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거나 본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단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진다.

이사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화상회의 또는 주주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원격 통신방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은 정족수 및 과반수 계산에 있어서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원격 통신 방법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의 심리는 계속적으로 재송신되어야 한다.

주주들은 투표용지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

투표용지의 전달은 (i) 직접 손으로 (이 경우 수령자는 수령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ii) 등기 우편으로, (iii) 회사의 등록 사무소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송우편 업체에 의하여, 또는 (iv) 회사의 등록 사무소의 팩스번호에 의하여 팩스 송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아래 표시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되고 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해당 주주의 이름, 주소 또는 등록 사무소
- 해당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주주가 보유하는 각 펀드 또는 하위클래스의 주식 수
- 주주총회의 의안
- 각 결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기권하는 주식의 수의 표시
- 해당 주주 또는 해당 주주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이름, 직위 및 서명.

투표용지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전의 룩셈부르크 시간 기준 0 시까지 회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시한 이후에 회사에 제출된 투표용지는 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 조의 목적상 "룩셈부르크 영업일"이라 함은 룩셈부르크에서 은행이 영업을 위하여 개점하는 일자를 말한다.

투표용지는 아래와 같이 회사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 (a) 직접 손으로 전달하여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수령자는 수령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송우편 업체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전달 시점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 (b) 팩스 송신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기록지상 수신측 팩스기의 팩스번호와 함께 기록된 시간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자본금이 여러 클래스 및 여러 하위클래스의 주식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의 주식에 부여되는 권리는 (회사의 해산 여부에 관계없이) 동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별도의 주주총회에서 행사된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동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의 주식의 발행조건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별도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본 정관 규정이 준용되고 해당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의 발행주식 1/2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한 경우 정족수가 완성된다.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주총회가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주주총회에서 해당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의 주주들 중 상기한 정족수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해당 클래스 또는 하위클래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1인 또는 그 대리인만으로 정족수가 완성된다.)

제 12 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의안을 기재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주주총회 소집 일자로부터 늦어도 8 일전까지 송부하거나 기타 통신수단으로 송신하는 소집통지에 따라 소집된다.

제 13 조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들은 회사의 주주일 필요가 없다.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과반수는 영국에서의 조세 목적상 비거주자여야 된다.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선임하고 그 임기는 차기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되는 때와 이사들에 대한 승계인이 선임되는 때 가운데 더 늦은 때까지 이다. 단, 주주들이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이사는 언제든지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해임 및/또는 교체될 수 있다.

이사의 사망, 사임에 의하여 또는 다른 이유로 이사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이사들은 다음 주주총회까지의 잔여 임기를 채울 이사를 과반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는 이사들 가운데 1 인의 의장과 1 인 이상의 부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총무담당임원 (secretary) (이사일 필요가 없음)을 선출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이사 2 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장소 (영국 이외의 장소)에서 소집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의장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출석한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어떤 이사라도 임시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또는 기타 연락수단으로 소집시간으로부터 늦어도 24 시간 전까지 모든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에 그러한 긴급한 사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각각의 이사들은 서면으로 또는 기타 연락수단으로 동의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종전에 이사회 결의로 채택된 일정에 정한 장소와 시간에 소집되는 개별적 이사회 모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사는 다른 이사를 서면으로 또는 기타 연락수단으로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팩스 또는 기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는 원격전화회의 및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다.

이사는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만 행위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개인적 행위에 의하여 회사를 구속할 수 없다.

(a)이사 본인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거나 원격전화회의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가 2인 이상이고 (b) 이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가 영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는 유효하게 심의하고 행위할 수 있다. 이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하거나 원격전화회의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채택된다. 이사회에서 결의에 대한 찬부가 동수인 경우 의장은 결정 의결권을 갖는다.

이사들은 결의의 회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경우에 서면 또는 전화를 포함한 기타의 연락수단에 의한 하나 이상의 별도의 증서에 의하여 가결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록에 적법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결의에서 결의일은 마지막 이사가 서명한 날로 한다.

이사회는 총괄 관리자, 총무담당임원, 부 총괄 관리자, 부 총무담당임원 또는 회사의 운영과 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포함하여 회사의 임원을 수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그러한 선임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임원은 회사의 이사나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 선임된 임원들은 본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부여하는 권한과 업무를 부여받는다.

이사회는 회사의 일일 경영과 업무를 수행할 권한 및 회사 정책 및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개인이나 법인(이사가 아니어도 됨)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 자격 및 재량권을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사 여부를 불문함)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위원회로서 그 위원의 과반수가 영국에 거주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상기한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이사회의 위원회는 영국에서 소집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영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그러한 소집은 적법하지 않다.

이사회 구성원은 영국에서 원격전화회의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 15 조

이사회 의사록은 해당 이사회를 주재한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사법 절차 또는 기타 용도로 작성되는 이사회 의사록의 사본이나 초록은 해당 시점의 이사회 의장, 총무담당임원 또는 2 인의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관리 및 처분 행위를 수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법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주주총회에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이사회가 갖는다.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주주들에게 부여되지 않은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에는 (2002년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투자제한 및 이사회가 정하는 투자제한에 따라) 위험분산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 하위펀드 및 관련 포트폴리오에 관한 투자에 있어 회사정책과 투자정책을 정할 권한이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특히 회사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회사 경영의 진로 및 회사의 업무는 2002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투자제한, 주식이 일반에게 모집되는 국가의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투자제한 또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의하는 투자제한 및 주식의 모집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에 기재되는 투자제한에 해당하는 투자 또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투자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회사의 자산이 (i)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money market instruments), (ii) 유럽공동체 지시 85/611 (Directive 85/611/EEC)에 따라 승인된 양도성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UCITS") 및/또는 유럽공동체 지시 85/611 제 1조 (2)항 1호 및 2호에 정의된 기타 간접투자기구("UCI")의 수익증권, 신용대부기관에 대한 예금, 금융파생상품 및 2002년 법률의 제1부에서 규정된 모든 기타 허용되는 자산에 투자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대상자산은 아래 항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a) 유럽연합 회원국의 증권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상장된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 (b) 유럽연합 회원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단, 해당 시장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인정되는 시장으로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함)
- (c) 기타 국가로서 동유럽, 서유럽, 미주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에 소재하는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상장된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 (d) 동유럽, 서유럽, 미주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에 소재하는 다른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단, 해당 시장이 정기적으로 운영되

고 인정되는 시장으로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함)

- (e) 최근에 발행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단, 발행 조건에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상기 (a) 및 (c)에 기재된 증권거래소 또는 상기 (b) 및 (d)에 기재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인정되며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규제시장 중 어느 하나에 공식 상장 신청될 것이 포함되어야 함)
- (f) 유럽연합 회원국내에 소재하는 가를 불문하고 (개정) 유럽공동체 지시 85/611 (Directive 85/611/EEC) 제 1조 (2)항 1호 및 2호에 정의된 UCITS 및/또는 기타 UCI의 수익증권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수익증권
 - 해당 기타 UCI가 금융부문 감독위원회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의 감독(유럽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감독에 상응하는 감독) 대상이고 당국들간의 협력이 충분히 보장될 것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 기타 UCI의 수익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UCITS의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하고, 특히 자산분리, 차입, 대출,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수반 (uncovered) 매도에 대한 규정 (개정) 유럽공동체 지시 85/611 (Directive 85/611/EEC)의 요건에 상응하여야 한다.
 - 기타 UCI의 사업은 보고기간 동안의 자산, 부채, 수익 및 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반기 및 연간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 그 자산의 취득이 예정된 UCITS 또는 기타 UCI의 설립서류(정관)에 따라 해당 UCITS 또는 기타 UCI의 자산 (또는 제 3자와 관련하여 다수의 하위펀드에 대한 부채의 분리원칙이 보장됨을 전제로 UCITS 또는 기타 UCI의 하위펀드의 자산)의 총 10% 이하만이 다른 UCITS 또는 기타 UCI의 수익증권에 투자될 수 있다.

펀드들은 그의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UCITS 또는 기타 UCI의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단, 현재 유효한 회사의 사업설명서에서 해당 펀드에 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g) 신용대부기관에 대한 예금은 요구시 지급될 수 있거나 인출권이 부여된 예금이어야 하고 그 만기가 12개월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신용대부기관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에 등록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그 등록 사무소가 유럽연합 비회원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CSSF가 유럽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것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주의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h)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파생상품(상응하는 현금결제상품을 포함) 및/또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단,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이러한 상품의 기초증권은 상기 (a) 내지 (g)에 기재된 상품, 또는 회사가 회사의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지수, 이자율, 환율 또는 통화로 구성되어야 하고,

-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은 주의 감독(prudential supervision)을 받고 CSSF 가 승인한 종류에 속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 장외 파생상품은 매일 신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받고 회사는 언제든지 그의 공정한 가치로 상쇄거래를 통하여 해당 장외 파생상품을 매도, 현금화 또는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
- (i) 규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단기금융상품으로서 2002 년 법률의 제 1 조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그 발행인은 투자자 및 예금보호를 위하여 자율규제를 받아야 한다). 단,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해당 단기금융상품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연합,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연합 비회원국,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 또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속하는 국제적 기관에 의하여 발행되었거나 보증되거나
 - 해당 단기금융상품은 상기 (a), (b) 또는 (c)에서 언급된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발행인이 발행하였거나
 - 해당 단기금융상품은 유럽공동체 법률에 따라 정의되는 기준에 따라 주의 감독 (prudential supervision)을 받는 기관에 의하여 발행되었거나 보증되거나 또는 CSSF 가 유럽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주의규정 이상으로 엄격하다고 간주하는 주의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그를 준수하는 기관에 의하여 발행되었거나 보증되거나
 - 해당 단기금융상품은 CSSF 가 승인한 종류에 속하는 기타 단체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단, (i)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는 상기한 문단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에 상응하는 투자자보호를 받으며 (ii) 그 발행인은 자본금과 유보금이 10,000,000 유로 이상이고 그 연간 재무제표를 유럽공동체 지시 78/660 (1) (Directive 78/660/EEC (1))에 따라 공고하는 회사이거나, 하나 이상의 상장회사들을 포함하는 그룹사내에서 해당 그룹의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이거나, 은행 유동성 라인 (banking liquidity line)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유동화기구의 재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하위펀드 순자산의 20%이하를 동일한 기관이 발생한 주식 및/또는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해당 하위펀드 투자정책의 목적은 아래에 따라서 CSSF 가 인정하는 특정 주식 또는 채무증권 지수의 구성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지수의 구성이 충분히 분산 (다각화) 되었고
- 해당 지수는 해당 지수가 나타내는 시장의 적절한 기준지수를 나타내며
- 해당 지수가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된다.

특히 일정한 양도성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규제시장에서 특별한 시장조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상한은 35%가 된다. 이러한 상한 한도내에서의 투자는 하나의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에만 허용된다.

회사는 유럽연합 회원국, 그 지방정부, 유럽연합 비회원국 또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속한 국제적 기관에 의하여 발행되었거나 보증되는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하위펀드 자산의 최대 35%를 투자할 수 있다.

회사는 유럽연합 회원국, 그 지방정부, OECD 회원국 또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적 기관에 의하여 발행되었거나 보증되는 서로 다른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위험 분산의 원칙에 따라 하위펀드 자산의 최대 100%를 투자할 수 있다. 단, (i) 해당 증권은 서로 다른 6회 이상의 발행회차 (six different issues)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ii) 각 발행회차의 증권이 해당 하위펀드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룩셈부르크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사의 각 하위펀드는 회사의 다른 하위펀드가 발행한 또는 발행하는 증권을 청약, 취득 및 보유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사의 1 인 이상의 이사나 임원이 어떤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거나 그 회사의 이사, 업무제공자(associate) 또는 임직원이라고 하여 회사와 해당 회사간의 계약이나 기타 거래가 영향을 받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사업상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회사의 임직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동시에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업무제공자인 자는 해당 회사와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나 기타 사업 관련 사안을 고려하고 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거래에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은 (해당 거래가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시장의 조건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알려야 하며 그러한 거래를 고려하거나 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거래 및 그에 대한 이사나 임원의 이해관계는 차기 주주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상기한 "개인적 이해관계"는 BlackRock Inc., 그의 자회사, 그의 지주회사 또는 이사회가 수시로 임의로 결정하는 다른 회사 또는 단체와의 관계를 포함하지 않고 그와 관련되는 사항, 입장 또는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에 의한 중과실 또는 고의적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어떠한 조치, 소송 또는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자가 회사의 현직 이사나 임원이라는 이유 또는 과거에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었음을 이유로 (또는 어떤 자가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주주이거나 채권자이고 그로부터 배상 면책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된 경우 그러한 회사의 현직 이사나 임원이라는 이유 또는 과거에 그러한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된 조치,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이사, 임원, 그의 상속인, 유언집행인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해당 이사, 임원, 그의 상속인, 유언집행인 및 관리인에게 배상하고 그를 면책할 수 있다. 합의가 되는 경우 회사는 합의된 사안 중 변호사로부터 배상면책의 대상이 되는 이어나 임원 등의 배임행위가 없었다고 통지받는 사안에 관해서만 배상면책을 제공한다. 상기한 배상면책을 받을 권리는 회사의 이어나 임원 등이 갖는 기타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 19 조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다른 방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2 인의 이사 또는 임원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

제 20 조

회사는 2002 년 법률의 제 113 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승인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승인된 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그 임기는 자신의 승계인이 선임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 21 조

아래에 상세히 규정되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02년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회사의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주주는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상환가격은 관련 순자산가치가 결정된 날 또는 그 후의 날로서 회사가 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내에 지급되며 본 정관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주식 클래스에 대한 순자산가치에서 (i) 이사회가 적합한 거래비용 및 금융수수료 준비금으로 간주하는 금액 (그 금액은 이사회가 정하는 대로 절사한다)과 (ii)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여 회사의 사업설명서에 기재되고 상환이 이루어 지는 날 현재 유효한 상환수수료 및/또는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를 차감한 금액이다. 주주는 록셈부르크에 소재하는 회사의 등록 사무소에서 또는 회사가 주식의 상환 대리인으로 선임한 기타 인이나 기관에게 서면으로 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과 적절한 양도 또는 이전 증빙을 첨부하여 상환가격이 지급되기 전에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상환하는 회사의 주식은 소각된다.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는 클래스의 주식 전부나 일부를 다른 클래스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전환가격은 해당 클래스의 주식에 대한 각각의 순자산가치로 한다. 단, 이사회는 자신이 정하는 대로 전환에 관한 제한규정을 부과할 수 있고 자신이 정하는 대로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전환할 수 있다.

주식의 상환이나 전환으로 인하여 한 클래스에 대한 1 인의 주주의 보유주식 가액이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최소보유) 주식 수 또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하게 될 것인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클래스의 모든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환이나 전환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는 어느 평가일에 어느 펀드의 모든 클래스의 주식에 대한 상환주문 또는 해당 펀드 밖으로의 전환주문 총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회사의 현행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주식을 상환 또는 전환할 의무가 없다. 회사는 회사의 현행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해당 펀드의 클래스(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러한 판단은 이사회에 따른)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환 및 전환을 연기할 수 있다.

상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상기와 같이 상환이 중단되거나 본 정관의 제 22 조에 따라 상환이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청구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상환청구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상환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상환이 이루어 지고 본 정관의 제 22 조에 따라 상환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상환은 상환감소 또는 상환중지 종료후 최초 평가일에 이루어진다.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하에서 지정된 결제기간내에 상환가격을 지급하거나 상환을 이행하기에 해당 펀드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환가격 지급은 지정된 결제기간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이자 지급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회는 1 인이 주주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금액 미만에 대하여 상환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불허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주식의 상환, 전환 또는 판매로 인하여 한 클래스에 대한 1 인의 주주의 보유주식 가액 또는 한 클래스의 보유주식 가액이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최소보유) 금액 미만으로 감소하게 될 것인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클래스의 모든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환이나 전환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인의 주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회사의 현행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이체를 원래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7 영업일내의 다른 날로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특정 클래스의 주식에 속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투자된 국가의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결제상의 제약 및 기타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장 45 은행영업일의 기간만큼 상환대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연장은 구체적 투자목적 및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소재하는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는 클래스의 주식에만 적용된다.

주주들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모든 관련 법령에 따르고 주주의 이익을 정당히 고려하여 현물로 (상환가격을) 지급할 수 있다. 현물상환의 경우 회사의 감사는 주주들의 비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2 조

회사는 주당 발행가격 및 상환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수시로 각 클래스의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이사회가 규정에 따라 지시하는 대로 최소한 월 2 회 이상 (이러한 순자산가치의 결정일을 "평가일"이라 함) 결정하여야 한다. 단, 평가일이 룩셈부르크의 증권거래소 또는 은행의 법정 휴일인 경우 익 은행 및 증권거래소 영업일이 평가일이 된다.

회사는 아래의 기간 동안 어떤 클래스의 주식의 순자산가치의 결정, 주주에 대한 동 주식의 발행 및 상환(전환 포함)을 중지할 수 있다.

- a) 관련 주식클래스에 속하는 회사 투자의 상당부분이 투자되어 호가되고 있는 주요 증권거래소 또는 시장의 폐쇄(통상적인 공휴일은 제외) 또는 그러한 증권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거래 제한 또는 정지
- b) 관련 주식클래스에 속하는 회사 소유 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비상 사태의 존속
- c) 관련 주식클래스에 대한 투자자산의 가격 또는 가치 또는 어느 증권거래소 또는 시장의 현재 시가 또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수단의 두절
- d) 주식의 상환가격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송금할 수 없거나 주식의 상환가격 지급을 위한 투자물의 현금화, 투자물의 취득 또는 지급과 관련한 자금체계가 정상적 환율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 e) 회사의 자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정확하게 계산될 수 없는 경우
- f) 본 정관의 제 28 조에 따른 펀드의 폐쇄 또는 합병에 대한 통지가 주어지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가결되는 경우, 또는
- g) 주식 발행의 중지에 국한하여 회사 전체의 해산 통지가 주어진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위 중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회사의 주식의 상환이나 전환을 요구하는 주주에게 제 21 조에 명시된 서면 상환 청구서를 제출하는 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떤 주식클래스에 관한 중지는 다른 클래스의 순자산가치의 계산, 다른 클래스의 주식의 발행, 상환 및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3 조

각 클래스의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1 주당 해당 클래스의 기준통화(및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통화)로 표시되고, 평가일과 관련하여 각 클래스당 회사의 순자산가치 (즉 각 클래스당 회사의 자산가액에서 해당 클래스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 클래스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4 사 5 입 기준으로 이러한 주식이 표시되는 통화에 대하여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정하는 소수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어떤 날에 마지막 평가를 한 후에 특정 클래스에 속한 회사 투자물의 상당한 부분이 거래 또는 호가되는 시장에서의 호가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초 평가를 취소하고 2 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최초 평가에 기초한 모든 인수, 전환 및 상환은 2 차 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여러 클래스의 주식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다음 방식으로 행해진다:

- A. 회사의 자산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현금 또는 예금 (발생이자 포함)
 - b) 받을 어음 및 매출채권(유가증권매각 매수대금 중 미회수분을 포함하나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제외)
 - c) 채권, 어음, 주식, 채권, 무담보채권주 (debenture stocks), 신주인수권, 워런트, 옵션 및 기타 회사가 소유하거나 약정한 투자자산 및 증권
 - d) 회사가 관련 정보를 합리적으로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받을 주식, 주식배당, 현금 배당금 및 분배금 (회사는 배당락이나 권리락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관행으로 인한 증권의 시가 변동에 대하여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 e) 회사가 보유한 이자부 유가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단, 원금에 포함되거나 원금에 반영된 이자는 제외)
 - f) 상각 되지 않은 회사의 예비비용 (단, 회사의 자본에서 직접 상각될 수 있는 예비비용은 제외) 및
 - g) 선급비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 및 성격의 기타 자산.

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a) 현금, 예금, 받을 어음, 약정금, 선급금, 배당 및 미수이자의 가치는 각 그 명목가치로 한다. 다만, 그러한 명목금액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반영한 금액을 차감한다.
- b) 어떤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나 상기 a)호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증권 및 기타 자산의 가치는 동 증권이나 자산이 거래되거나 거래를 위하여 상장된 증권거래소의 최종 증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평가시점 이후에 종료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치는 평가시점 또는 기타 시점에서의 동 증권의 가격을 사용한다. 회사의 당시 유효한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특정 상황인 경우 이사회는 제의가격 또는 청약가격을 사용하여 가치를 결정한다. 기타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또는 자산의 가치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동 증권 및 자산이 둘 이상의 증권거래소들이나 규제된 시장들에서 호가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이사회는 자신의 재량으로 상기한 목적을 위하여 증권거래소들 중 하나 또는 규제된 시장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c) 공식적 증권거래소 또는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 또는 상장되지 않은 증권 및 그렇게 거래되거나 상장된 증권이라도 알려진 마지막 증가가 그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증권은 이사회가 그러한 증권의 기대처분가 또는 기대취득가에 근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다.
- d) 상기한 규정의 충족을 전제로 평가일에 회사에 속하는 현금이나 기타 자산이 처분되

었거나 처분되고 있는 도중이라면 그러한 처분으로부터 회사가 얻을 금액이 회사의 자산에 포함된다. 단, 그러한 처분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다.

- e) 특정가치가 위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이사들의 판단으로 다른 평가방법이 그 해당 증권이나 기타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사들의 재량으로 그 가치를 결정한다.

B. 회사의 부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모든 차입금, 어음 및 미지급금 (자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은 제외)
- b) (자산운용 수수료, 보관회사 수수료 및 회사의 대리인의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관리비용
- c) 금전 또는 현물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회사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미지급 부채 (평가일이 배당금을 받을 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 또는 그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회사의 미지급 배당금을 포함)
- d) 평가일까지의 자본과 이익에 근거하여 회사가 수시로 결정하는 장래 세금에 대한 적절한 준비금과 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준비금, 그리고
- e) 여하한 종류 또는 성격의 회사의 모든 기타 채무.

상기한 부채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는 설립비용, 투자자문인, 투자운용회사, 회계사, 보관회사, domiciliary, 등록인, 명의개서대리인, 지급대리인, 등록장소에서의 확정 대표자, 회사가 고용한 기타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법률 또는 감사서비스, 판촉, 인쇄, 보고, 광고 비용 (광고비, 사업설명서, 설명메모, 등록신청서, 연례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작성, 인쇄 및 광고비용, 증권거래소 상장비용, 정부기관에 대한 등록 및 승인 취득 비용을 포함) 및 자산매매비용, 이자, 은행요금, 중개, 우편, 전화 및 텔렉스 비용 등의 모든 기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비용 및 예측된 수치를 매년 또는 기타 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계산할 수 있고 해당기간에 대하여 그 비율만큼 할당하여 계산할 수 있다.

C. 이사회는 각 클래스 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자산집합을 결정한다.

- a) 각 클래스의 주식 발행 대금은 회사 장부에 해당 주식 클래스의 집합자산으로 계상되고, 해당 주식 클래스에 귀속하는 자산, 부채, 이익 및 비용지출은 본 조에 따라 해당 집합자산에 계상된다.
- b) 어느 자산이 다른 자산에서 파생한 경우 그러한 파생자산은 회사의 장부에 해당 자산을 파생시킨 자산과 동일한 집합의 자산으로 계상되고, 자산의 재평가 시 가치의 증가나 감소는 해당 집합에 계상된다.
- c) 회사가 특정집합의 자산과 관련되거나 특정 집합의 자산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와 관련되는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부채는 해당 자산집합에 할당된다.

d)회사의 자산이나 부채가 특정 집합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는 관련 주식 클래스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집합자산에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단, 이사회는 사정상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에 할당한 자산 또는 부채를 재할당할 수 있다. (채권자가 회사의 일정한 자산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자산 또는 부채를 하나의 자산집합에서 다른 자산집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전부나 일부가 이사회가 본 조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장부상 해당 자산 또는 부채를 하나의 자산집합에서 다른 자산집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제 3자 채권자들이 해당 클래스의 자산에 대하여만 상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채는 클래스별로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e) 어떤 클래스의 주식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거나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해당클래스의 순자산가치는 해당 배당금액만큼 감소한다.

D. 본 제 23 조의 목적상 아래와 같다.

(a) 본 정관 제 21 조에 의해 상환 되어야 하는 회사의 주식은 본 조에서 언급된 평가일 업무종료 직후의 시점까지는 발행주식으로 간주되고 고려되며, 동 시점으로부터 상환 가격이 지급되는 때까지 회사의 채무로 간주된다.

(b) 미달러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회사의 모든 투자, 현금 잔액 및 기타 자산은 주식 자산 가치의 결정시점(날)에서 유효한 시장의 환율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c) 평가일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증권의 매도 또는 상환의 효력은 가능한 한도내에서 해당 평가일에 발생한다.

제 24 조

회사가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모집하고 판매하는 주당가격은 (i) 해당클래스의 주식에 대하여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순자산가치에 (ii) 판매서류에 규정된 판매수수료 및 (iii) 이사들이 적합한 거래비용 및 금융수수료 준비금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더한 가격 (그 가격은 이사들이 정하는 대로 올림한다)이다. 주식의 모집 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상기 판매수수료에서 지급한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해당 순자산가치가 결정된 일자로부터 7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회가 정한 기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현물 출자된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감사인이 투자자의 비용으로 작성하는 특별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관련 법률에 따르는 경우 발행가격은 회사 및 관련 펀드의 투자방침과 투자제한에 부합하는 이사회가 수용할 만한 회사 증권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제 25 조

회사는 간접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보관회사”)과 보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의 모든 증권 및 현금은 보관회사에 의하여 또는 보관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고, 보관회사는 회사 및 회사의 주주들에게 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보관회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보관인으로서 행위할 회사를 발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러한 회사를 발견하는 즉시 그러한 회사를 사임하는 보관회사를 대체할 보관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보관회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보관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승계 보관인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될 때까지는 보관회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제 26 조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9 월 1 일부터 익년 8 월 31 일까지이다. 회사의 회계장부는 미달러화로 표시한다. 본 정관의 제 5 조에 규정된 여러 클래스들이 있는 경우로서 각 클래스 내의 회계가 서로 다른 여러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 회사의 회계목적상 그러한 각 클래스의 회계는 미달러화로 환전하여 합산한다.

제 27 조

정기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서 매년 영업결과 및 기타 분배금의 사용을 결정한다. 단, 어떤 클래스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여부 또는 어떤 클래스에 대한 기타 분배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해당 클래스의 주주들만의 의결을 요한다.

배당금은 미달러화 또는 해당 클래스의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표시하는 기타 통화로 지급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중간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어떤 클래스의 주식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배당금의 수준이 회계기간 동안 해당 클래스의 주식의 발행 또는 상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포트폴리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수익평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배당금을 결정한 후 회사의 자본금이 법에 정한 최소자본금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누적주식에 대하여는 배당을 결정할 수 없다.

제 28 조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의 권한과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가 지명한 1 인 이상의 청산인들 (자연인 또는 법인)이 청산을 수행한다. 청산인들은 각 클래스의 주식의 주주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각 클래스의 주식에 대한 순 청산금액을 지급한다.

회사의 총 순자산가치가 미화 100,000,000달러 미만이 되는 경우 회사는 주주들에게 통지하

여 통지기간의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일에 상환되지 않은 주식 전부(일부는 안됨)를 상환할 수 있다.

(i)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연속하여 30일 동안 미화 50,000,000달러 미만인 경우 또는 (ii)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유로 또는 해당 펀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또는 정치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x) 통지기간의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일에 동 펀드의 주식 전부(일부는 안됨)를 상환함으로써 또는 (y) 해당 펀드에 속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수시로 변경되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 통지한 후 동 펀드를 회사의 다른 펀드 또는 다른 UCITS와 합병함으로써 동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전항에 기재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어떤 펀드에 속하는 모든 주식을 강제상환함으로써 동 펀드를 해지하거나 동 펀드를 회사의 다른 펀드 또는 다른 UCITS와 합병하려면 해당 해지나 합병이 동 펀드 주주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단, 그러한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정족수가 출석하지 않고도 유효하게 소집될 수 있고 행사된 의결권의 단순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결정하거나 해당 펀드의 주주들이 승인한 합병은 그에 관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 통지하면 해당 펀드의 주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펀드의 청산 종료시 주주들이 청구하지 않은 청산 대금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Caisse de Consignation에 예치되며 30년 이후에는 주주가 청구할 수 없다.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상기 규정에 따라 해지되어야 하는 펀드의 주식에 대한 상환가격은 해당 해지로 인한 청산비용과 예상 현금금액을 반영하여야 하고 해당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29 조

본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룩셈부르크 법이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 및 의결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타 클래스의 주식에 대한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주식의 주주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추가적으로 그러한 특정 클래스에 관하여 상기한 정족수 및 의결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30 조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상업회사에 관한 1915년 8월 10일자 제정된 법, 그 개정법률 및 2002년 법률에 의한다.